

# 女教師의 媳父母觀

—同居 및 扶養問題를 中心으로—

## The View of Home Economics Teachers on Parents-in-Law

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調査方法 및 調査對象家庭의 性格	
III. 研究結果 및 解釋	
IV. 要約 및 結論	

淑明女子大學校 家政大學  
College of Home Economics  
Suk Myung Women's University  
專任講師 李 貞 玕  
Fulltime Instructor Lee, Jung Woo

### Abstract

The increase of female employees tends to change the traditional division of the roles of members in the family, and as a result it changes the idea of family relations and the extent of how housewives with job feel happy toward their marriage. Therefore, it may be very significant to study what attitude woman job holders as housewives have toward their family, especially parents-in-law.

In this paper the writer has sampled as an exemplary group woman teachers who teach home economics in high schools in Seoul, and investigated what opinion they have toward the problem of living together under the same roof with their parents-in-laws and otherwise of financing them in an older age. This analysis is based upon 130 questionnaires collected as proper data out of 138.

The conclusion made from the analysis is as follows:

- (1) as regards the living together under the same roof if necessary in the future, one-fifth of the group approves in affirmative terms;
- (2) but when parents-in-law become older, about half of the teachers wish to live with them in the same home, and except the indefinite few, one-third of them

taken the negative position;

(3) finally, the great majority (84%) regard as their proper duty the financial support in any case when parents-in-law become older, and only five per cent answer in negative.

This analysis leads to the further conclusion that the idea of family relations cherished by high school teachers of home economics is not yet far off the traditional frame of thought. Their view tends on the one hand towards the neuclear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of gradual improvement, but on the other it still sticks to the traditional line without too much impairing it.

## I. 問題의 提起

남녀 평등사상의 확립 및 女性의 專門高等教育의 보편화에 따라서 女性의 직장진출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직장진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家族間의 關係 즉 夫부관계, 父母와 子女間의 關係,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변화가 초래 되었다. 社會的 狀況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는 서로 函數關係에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간의 價値觀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은 다시 時代의 趨勢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직장진출은 전통적으로 정해진 家族內의 役割分擔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sup>1)</sup> 그 결과 家族關係에 대한 觀念 및 家庭生活에 대한 만족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職業女性의 家族觀 특히 媧家族觀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 가정내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照明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媧父母와의 關係가 좋은 부부일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고 조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sup>2)</sup> 媧關係는 크게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시켜서 媧關係의 중요성을 筆者는 이미 다른 論文에서 媧母—子婦間의 관계에 존재하는 心理的, 精神的인 諸要因<sup>3)</sup>의 調査 및 大都市 中流家庭의 姑婦사이에 존재하는 價値體系<sup>3)</sup>의 研究를 통해서 究明한 바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직장여성중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보는 教師集團 가운데 高校家政科教師를 調査對象으로 選定하여 媧家族觀 특히 媧父母와 同居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장차 老後扶養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意見을 分析하므로써 직업여성의 家族觀을 밝히보고자 한다. 이들이 媧關係에 관해서 어떠한 觀念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어느만큼 女高生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장차 이 女高生들이 결혼한 후 어떻게 그들의 媧家族關係를 운영 유지할 것인가를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이 研究는 教育的인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II. 調查方法 및 調查對象 家庭의 性格

### (1) 調查對象

調査의 對象은 서울시내 女子高等學校家政科教師 全員이다<sup>18)</sup>.

질문지는 未婚教師, 無應答者 및 4명의 媳母인 教師의 경우를 제외한 138部를 수집하였다. 그가운데 다시 자료처리상 未備한 것을 제외한 130枚를 選定하여 이 調査의 데이터로 삼았다.

이 集團을 選定한 이유를 들면 그들이 직업여성중에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家政科 專攻教師들이므로 상당히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의 價値觀이 職業女性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일반적 模型을 提示할 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질문서의 項目은 모두 24항목이다. 本稿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高校女教師들의 대부분의 年令이 낮아 子婦의 위치에 있으므로 子婦측중심의 家族觀에 국한시키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1) 媳父母와의 同居問題와 (2) 媳父母의 老後 扶養問題에 초점을 두고 집중 분석하기로 하였다.

### (2) 調查對象 家庭의 性格

#### A. 應答者の 年令

35~39세 사이의 年令층이 32%로 가장 많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약 1/3에 해당되며 中堅層의 教師들로서 직업 및 가정에 있어 가장 활동이 기대되는 층이다. 다음으로 25~29세의 29%, 30~34세군은 27%이다. 따라서 88%의 교사들은 25~39세 사이에 속하고 있으므로 專門職業을 가진 기혼여성으로서 어느정도 원숙한 意思를 반영하기에 적절한 年令分布라고 생각된다.

[표 1] 年 齡 分 布

연령군	직업	
	여	교 사
	N	%
25~29세	38	29
30~34	36	27
35~39	42	32
40세 이상	14	10.6
계	130	98.6%

[표 2] 宗 教 有 無

종교	직업	
	여	교 사
	N	%
유	75	58
무	55	42
계	130	100%

B. 應答者의 宗教

응답자의 58%는 宗教(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를 가지고 있다. 이 비율은 일반주부의 宗教를 가진 비율(70)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이러한 면은 직업여성이 가정주부보다 시 상의 制限을 크게 받으므로 이러한 結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C. 住居狀況

응답자의 自宅소유율은 88%이며 전세나 월세로 있는 家庭은 12%미만이다. 이것은 中流 家庭主婦의 주택소유율(56.6%)와 비할 때 女性이 專門職을 소유하므로서 보다 더 경제적 向上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절대적인 函數關係에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표 3] 住宅事項

주택사항	직업	
	직업	여교사(%)
자택	택	88.4
전세	세	10
월세	세	1.5
계		99.9%

[표 4] 家庭의 月收入

월수입	직업	
	직업	여교사(%)
3~5 만원 미만		2.3
5~8 "		12.3
8~10 "		11.5
10~15 "		56.1
15~18 "		13
18만원 이상		4.6
계		99.8%

[표 5] 子女數

자녀수	직업	
	직업	여교사(%)
1~2명		56.9
3~4		26.9
5~6		0.8
없음		15.3
계		99.9%

D. 生活程度

자기가 가정의 經濟水準을 스스로 「中」이라고 생각하는 率이 2/3, 「中上」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1/3이다. 실제로 가정의 月收入을 보더라도 10만원 이상이 약 74%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표4참조) 안정된 階層이라 볼 수 있다.

E. 子女數

[표5]에서 보듯이 반수이상은 1~2명의 子女를 두고 있고 27%는 3~4명의 子女를 두고 있다. 어린이가 없는 家庭 및 1~2명을 둔 가정은 70%이며 子女를 5~6명 이상 둔 가정은 단 1가구이다. 따라서 이들은 家族計劃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子女가 없는 15%중의 일부는 30~40대임에도 無子女인 경우이며 다른 일부는 結婚한지 2년 이내의 주부르 간주할 수 있다.

F. 結婚生活 持續年數

2~5년 미만이 3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28%이다. 결혼경력 2년 미만의 11%를 제외한 전체의 89%는 비교적 결혼생활에 스스로 安定하고 媳父母나 媳家族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수립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표 6] 結婚生活 持續 年數

결혼지속년수	0~2년미만	2~5년	5~10년	10~15	15년이상	계
N	14	47	36	21	12	130명
%	11	36	28	16	9	100%

### Ⅲ. 研究結果 및 解釋

#### (1) 媳父母와의 同居問題

法的으로는 결혼한 부부의 住居決定權은 男便이 가지고 있으며<sup>11)</sup>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부부간의 相議를 거친후 男便이 住居를 결정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아직도 媳父母에게 住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結婚後 두 家庭 즉 아들 부부와 媳父母가 함께 지낼것인가는 未婚女性의 관심사의 하나이다. 따라서 住居問題에 대하여 高校家政科敎師인 子婦側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將來 新婦가 될 학생들과의 밀접한 關係로 보아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同居하고 있거나 동거경험이 있는가? 同居를 앞으로도 희망하고 있는가? 媳父母의 老後에는 同居를 해야할 것인가 등을 조사하여 고찰하여 보겠다.

Duvall 은 한 지붕아래 두 주부(시아머니와 며느리)가 살게되면 비록 집자체가 아무리 크 다하더라도 조화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sup>12)</sup>. 일반적으로 歐美에서는 혼자 남은 할머니의 96%인 절대다수가 別居를 보다 좋다고 보고있다<sup>13)</sup>. 실제로 美國의 家族研究를 살펴보면 核家族의 비율은 1940년에 93.2%, 1950년에 94.4%, 1960년에는 97.7%로 증가하므로써 거의 모든 家口가 核家族化되어 가고 있다<sup>14)</sup>. 한편 결혼한 신혼부부중 만일 父母와 동거한다면 이들의 2/3는 남편의 부모보다는 부인의 父母와 지내며 이것조차 장기간의 동거는 아니다<sup>15)</sup>.

우리의 경우는 결혼한 아들이 分家하여 별거하더라도 서양식의 核家族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며 父母가정과 상당한 相互作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가족연구를 考察하여 보면 양친가정이 기혼子女와 同居하는 비율은 年齡이 많을수록 크며 동거희망율도 年齡上昇에 比例하여 증대한다<sup>16)</sup>. 한편 大都市(서울)에서는 既婚女性의 상당수가(69%) 老後의 別居를 희망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반수정도만이 찬성하고 있다<sup>17)</sup>. 都市의 젊은 아파트주민은 絶對多數가 시부모와의 별거를 찬성하는데 반하여 농촌·부락민들은 다대수(76.4%)가 동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對照的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sup>18)</sup>.

위와같은 研究調査와 비교할 때 本 調査는 이들이 전문직여성 특히 女敎師라는 점에서 양상이 조금 다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1/3은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 경험이 있으며 別居하고 있는 비율은 약 2/3(65%)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別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체 同居경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65%는 媠父母와 媠家族이 있으며 35%는 남편이 長子나 獨子가 아니거나 媠父母가 없거나 혹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시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

장차 기회가 있으면, 또는 필요하다면 동거를 희망하는가에 약 1/5은 贊成이고 불찬성이 약 2/5가 넘으며 기타는 2/5미만이다. (기타—시부모가 안계되거나 장자가 아닌 경우(표8 참조) 실제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家庭生活를 도맡아줄 親母나 媠母의 도움 이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同居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음은 客觀的 條件의 난관을 감수하더라도 정신적 自由를 누리겠다는 現代직업여성의 性向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媠父母의 老後에는 양가정이 동거하려고 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社會保障制度나 그밖의 老人을 위한 公共福祉施設을 충분한 水準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子女들이 노후의 父母를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경에 처하게 된다. 本稿에서 응답결과를 보면 약 1/3은 찬성, 약 1/3은 불찬성이라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17%를 긍정적으로 처리한다면 전체의 약 반수(48%)는 시부모의 노후에는 同居함을 찬성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9〕 老後同居

직업		여 교 사
노후동거		
찬성한다		30.7
불찬성한다		31.5
아무래도 좋다		16.9
생각해본일없다		12.3
모르겠다		8.4
계		99.8%

이것은 서울의 아파트 住民의 경우, 기혼자녀가정과 노후동거(31%)에 비하거나<sup>9)</sup> 대도시 中流가정의 경우(44%)<sup>3)</sup>와 比較해 보면 높은 찬성율이라고 볼 수 있다. 同居經驗 有無에 따라서 媠家族關係에 대한 觀念의 차이가 있는가를 分析하여 본 결과 상당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동거경험이 있는 女教師集團은 도리어 약 40%가 同居를 찬성하고 58%는 불찬성인데 비하여 同居경험이 없는 집단은 약 10%만이 찬성하고 있을 뿐이며, 약 37%는 불찬성이고 기타는 「모르겠다」, 「아무래도 좋다」등으로 약 5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의 기타(2%)의 비율과 比較할

〔표 7〕 同居如否

직업		여 교 사
동거여부		
동	거	35
별	거	65
계		100%

〔표 8〕 將來同居希望

직업			여 교 사
장래동거희망여부			
찬	성		20.7
불	찬	성	43
기	타		36.2
계			99.9%

이것은 서울의 아파트 住民의 경우, 기혼자녀가정과 노후동거(31%)에 비하거나<sup>9)</sup> 대도시 中流가정의 경우(44%)<sup>3)</sup>와 比較해 보면 높은 찬성율이라고 볼 수 있다.

同居經驗 有無에 따라서 媠家族關係에 대한 觀念의 차이가 있는가를 分析하여 본 결과 상당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동거경험이 있는 女教師集團은 도리어 약

때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동거 未經驗집단의 경우) 두 가정의 同居함으로써 오는 여러 長短點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同居與否에 대한 의견이 확립되지 않은 반면, 전해들은 남들의 同居경험(시집살이)을 통해서 강렬한 忌避感을 나타낸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시부모의 老後의 동거에 대하여는 어떠한가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은 老後同居에 대한 찬성율(약48%)이 동거경험이 없는 集團(20.2%)에 비하여 2배가 훨씬 넘는다. [표10]의 찬성율인 39.3%와 9.5% 및 [표11]의 찬성율인 47.8%와 20.2%를 비교하면 흥미있는 結論이 나올 수 있다. 즉 同居경험이 없는 女教師集

[표 10] 同居希望如否

동거경험		여 교사	
		유	무
동거희망	찬 성	39.3	9.5
	불 찬 성	58.6	36.9
	기 타	2.1	53.5
계		100%	99.9%

[표 11] 同居經驗有無에 따른 老後同居如否

동거경험		여 교사	
		유	무
노후동거여부	찬 성	47.8	20.2
	불 찬 성	32.6	30.9
	아무래도좋다	15.2	19.7
	생각해본일없다	2.1	17.8
	모르겠다	2.1	11.1
계		99.8%	99.7%

團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同居하겠다는 의견은 극소수(9.5%)이나 父母나 늙으면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것에는 약 1/5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同居經驗이 있는 집단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父母와 同居할 뿐 아니라(39.3%) 또한 父母의 老後에는 함께 모시고 살겠다(47.8%)는 것이다. 즉 2/5전후 내지 약 반수정도에 해당하는 同居經驗 女教師들은 장차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同居에도 거의 일관성있게 찬성하고 있다. 同居해본 집단은 비교적 媳父母와 원만하게 적응한 경험을 가졌거나 또는 적응하는데 자신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보겠다. 또 근래 子婦側만이 아니고 媳母側도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져 직업있는 子婦를 용납하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자별히 都市의 경우에는 증대되어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子婦側도 직업에서 오는 만족감과 家族關係를 다루는 직장에 있는 관계로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同居時에는 適應性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老後의 媳父母와의 同居 與否問題보다도 장차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媳父母와 同居할 용의가 있다는 贊成率이 職業有無 즉 職業을 가진 주부와 가정생활에만 專念하는 주부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는 재미있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결론은 이 贊成率이 職業有無와는 별로 관계가 없이 거

團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同居하겠다는 의견은 극소수(9.5%)이나 父母나 늙으면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것에는 약 1/5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同居經驗이 있는 집단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父母와 同居할 뿐 아니라(39.3%) 또한 父母의 老後에는 함께 모시고 살겠다(47.8%)는 것이다. 즉 2/5전후 내지 약 반수정도에 해당하는 同居經驗 女教師들은 장차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同居에도 거의 일관성있게 찬성하고 있다. 同居해본 집단은 비교적 媳父母와 원만하게 적응한 경험을 가졌거나 또는 적응하는데 자신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보겠다. 또 근래 子婦側만이 아니고 媳母側도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져 직업있는 子婦를 용납하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자별히 都市의 경우에는 증대되어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子婦側도 직업에서 오는 만족감과 家族關係를 다루는 직장에 있는 관계로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同居時에는 適應性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표 12] 職業有無에 따른 同居希望

동거희망여부		직업유무	
		유	무*
동거희망여부	찬 성	20.7	20
	불 찬 성	43.0	80
	기 타	36.1	—
계		99.8%	100%

\* 이 경우, “中流家庭의 家族關係”

의 20%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2) 老後의 經濟的 扶養問題

媳父母 扶養問題는 歐美 여러 나라의 경우 社會保障制度가 잘 되어 있어서 별로 重視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老父母와 젊은 子婦側의 상호간의 태도가 상당한 가정적 마찰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高校 家政科 教師의 경우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는 것은 직업여성의 家庭問題 解決의 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 研究에 의하면 子女가 老父母를 반드시 扶養해야 한다는 태도는 남녀가 다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 贊成率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56.5%)<sup>6)</sup>.

한편 미국에서 Sussman이 父母들을 상대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sup>17)</sup> 경제적 부양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비율이 96%였다. 미국사회에서는 서로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싫어하며, 독립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으로는 媳父母의 老後扶養에는 社會的·倫理的 責任까지 부여하는 전통적 관습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으로 갈수록 比例 增大하고 있다<sup>9)</sup>.

女教師들의 73%는 老後의 媳父母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찬성하고 있고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比率(11.5%)까지 합하면 전체의 84%인 大多數가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比率은 5.3%에 불과하다.

〔표 13〕 老後扶養

노후부양	직업	
	여	교 교사
찬 성	73.3	
불 찬 성	5.3	
아무래도좋다	11.5	
생각해보일없다	6.9	
모르겠다	2.3	
기 타	1.5	
계	99.8%	

이와 같이 많은 수가 부양의무에 찬성하고 있음은 中流家庭教育이 전통적인 孝道나 敬老를 상당히 重視하여 왔고 또한 高等教育을 받은 中流層에 속하며 母법이 되어야 할 教師의 직업의식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調査 및 그밖의 筆叢의 근래의 調査를 종합해 보면 설사 媳父母와 子婦家庭間의 전통적인 강한 유대는 매우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시부모의 노후 부양문제는 一定水準이상의 한국가정에서는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비교적 밝다고 전망될 수 있다.

그러나 부양문제에 관해서는 同一한 女教師集團內에서도 同居經驗有無 및 年齡差에 따라서 相異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의 의견은 일반가정 주부에 비해서 또한 相



뿔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하나씩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同居經驗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따라서 教師들의 老後扶養 贊反率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同居經驗이 있는 집단은 82.6%가 경제적 부양을 찬성하고 「아무래도 좋다」가 8.6%를 여기에 합하면 긍정적인 應答은 91.2%의 絶對多數에 달한다. 한편 同居經驗이 없는 집단은 찬성 66.6%에 「아무래도 좋다」의 13%를 합해도 79.6%가 될 뿐이다. 不贊成의 비율은 동거경험이 없는 集團이 있는 집단보다 3배이상(7.1% : 2.1%)이며 「생각해본일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비율도 2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율로 미루어 보면 한번이라도 양가정이 同居한 경험이 있을 경우 시부모에게 노후에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4] 同居經驗 유무에 따른 扶養關係

노후부양	동거경험		동거경험무	
	N	%	N	%
찬성	38	82.6	56	66.6
불찬성	1	2.1	6	7.1
아무래도좋다	4	8.6	11	13.0
생각해본일없다	2	4.3	7	8.3
모르겠다	1	2.1	4	4.7
계	46	99.7	84	99.7

따라서 결혼 후 처음부터 姑婦間에 別居하기보다는 일단 同居하여 한번은 서로 생활을 같이 하여 選好라든지 人性을 서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 두 가정이 別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한국과 같이 완전한 核家族體制가 아닌 전통적 家系尊重觀念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가정의 유대가 이루어질 타협적인 소지가 아직도 있음을 알게될 것이다.

그러면 年齡에 따른 시부모의 老後扶養에 대한 贊反率의 분포는 어떠한가? 20代 후반의 젊은 층은 30代 후반의 中年層보다 찬성비율이 큰 반면 「아무래도 좋다」는 비율은 中年層이 젊은 층보다 크다. 따라서 「아무래도 좋다」는 응답까지 합한 긍정적인 태도에는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간에 女教師들은 老後의 媿父母扶養을 多大數가 찬성하고 있다.

[표 15] 연령별 扶養關係

부양찬반	연령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 이상
찬 성		78.9%	75.0%	64.2%	(6명)	(4명)
불 찬 성		7.8	8.0	4.7	—	—
아무래도좋다		7.8	11.1	14.2	—	(2명)
생각해 본일 없다		5.2	5.5	11.9	—	—
모르겠다		—	—	4.7	(1명)	(1명)
%		99.7	99.6	99.7	—	—
N		38	36	42	7	7

끝으로 職業有無 즉 특히 家政科 高校教師와 大都市의 中流層의 一般家庭主婦가 老後扶

養問題를 둘러싸고 어느정도의 異見이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 가정주부들은 93%가 老後의 媳父母扶  
 養을 찬성하는데 비해서 教師들은 73%만이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아무래도 좋다」는 中  
 立的 意見까지 합해도 83%정도가 扶養을 찬  
 성하고 있을 뿐이다. 직업을 안 가진 가정주  
 부의 경우는 거의 絶對多數가 老後扶養을 찬  
 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教師들은 10명중 1명의  
 비율로 不贊成이 더 많은 셈이다. 그러나 되풀이 하거나와 職業有無에 거의 관계없이 媳父  
 母扶養을 찬성하는 주부의 수는 낙관적으로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16〕 職業有無에 따른 贊反

경제부양	직업유부	
	유	무
찬 성	73.3	93.3
불찬성	5.5	6.7
아무래도 좋다	11.5	—
생각해본일없다	6.9	—
모르겠다	2.3	—
계	98.3	100.0

#### IV. 要約 및 結論

이상과 같이 직업여성인 高校 家政科 教師들의 家族觀 특히 媳父母와의 同居 및 扶養問  
 題를 분석하여 보았다. 물론 이와 같은 제한된 조사를 통해서 얻은 結論을 직업여성 전체  
 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高等教育을 받은 專門職에 종사하는 여성의  
 일반적 경향의 일면을 밝히는 것은 全體 직업여성 내지는 一般女性이 家族關係에 대해 가  
 지는 觀念을 究明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內 女子高等學校 家政科 教師를 통해 實態調査를 실시한  
 결과 수집된 資料를 토대로 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媳父母와의 同居觀念을 보면 5중1의 비율로 同居를 찬성하여 대체로 80%는 別居를  
 더 희망하고 있다. 직업여성의 경우 시부모나 친모와의 同居가 상당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율이 나온 것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정신적 자유를 보다  
 더 重視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나아가서는 核家族化 傾向이 合理化되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

(2) 老後에는 媳父母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 반수에 이르고 대략 1/3만이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父母尊重 및 敬老思想과 같은 傳統的 思考方式이 여전히  
 支配의임을 가리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차거운 個人中心思想이 고개를 쳐드는 징  
 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3) 그러나 女教師들의 多大數(84%)는 老後의 시부모가정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5%만이 不贊成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찬성비율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와같은 專門職女性들의 자세는 자라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家族觀의 수립에는 긍정적이

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社會保障制度가 未備한 한국의 現況에 비추어 보아 老人들의 생활에 밝은 전망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專門職女性인 家政科 教師들의 媳父母觀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觀點이 대체로 전통적 思考方式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들의 家族觀은 한편으로는 現代의인 核家族關係를 지향하면서 서서히 漸進的改革을 의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傳統을 긍정하면서 在來의 家族觀을 크게 파괴하지 않는 保守主義的 態度에 입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1) 金隣洙, 家族關係學, 진명사, 1973.
- 2) 金順玉,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연구, 제3호, 1973.
- 3) 李貞玕, “大都市 中流家庭의 가족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1호1권
- 4) 李貞玕, “주부와 시모간의 關係考察”, 대한가정학회지, 제6호
- 5) 李効再, 家族과 社會,
- 6) 李効再, 都市人的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제27집 1971.
- 7) 崔在錫,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아세아 연구, XIV권 1호.
- 8) 李泰賢, 한국기혼여성의 고부간의 관계, 又棠 趙垢烘先生 華甲記念 가정학논문집, 1968.
- 9) 崔在錫,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70.
- 10) Duvall, Evelyn M., *In Laws; Pro and C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6).
- 11) Duvall, Evelyn M., *Family Development,* (New York; J.B. Lippincott Co., 1967).
- 12) Hollis, Florence, *Women in Marital Conflict: A Casework Study* (New York; Family Sevrice Association, 1949).
- 13) Good, W., *The Family,* 1965.
- 14) Landis, Judson C, and Mary G Landis, *Personal Adjustment Marriage and Family Living*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 15) Leslie, Gerald R,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7).
- 16) Smith, William M., “Family Plan for Late Years,” in *Marriage and Family Living* (Fea. 1954)
- 17) Sussman, M.B. and L.G Burchinal, “Parental Aid to Married Children: Implication for Family Functioning” in *Kinship and Family Organization,* ed by B.Faber.
- 18) 이 靑姪은 1973년도 夏季放學中 서울 시내 女子高等學校 家政科 教師全員을대상으로한 강습기간중 이루어진 것이며 무더위속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